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일부 개정 법률(제20814호) 개정 · 공포 알림

1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일부 개정 법률(제20814호)이 2025. 3. 18.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 ·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< 개정 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 >

-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신청하도록 하고,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 등에게 행정적 ·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-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중 ‘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’ 를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,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

2. 해당 개정 법률은 2025. 3. 18.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 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(제20814호)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
수신자 관계부처, 관계 기관, 지방자치단체, 본부(57개 전부서), 6개 지방청장(54개 전부서), 식품의약품안전
평가원(42개 전부서), 관련 협회

주무관 **황재양** 사무관 대결 2025. 3. 18. 과장 전결
이겨레

협조자

시행 마약정책과-2049 (2025. 3. 18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오송보건의료행 / mfds.go.kr
정다운 식품의약품안전처

전화번호 043-719-2805 팩스번호 0502-604-7992 / whgdkg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힘내라 대한민국!